



제339회 임시회
2015. 4. 22.(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 충청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장선배 의원 등 7명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15년 4월 13일
- 회부일자 : 2015년 4월 14일

3. 제안이유

- 기금 증식을 위해 매년 이자의 20% 이상을 재 적립 하도록 명시한 조항을 삭제하여 기금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함.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하고자 함.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문구를 수정하여 일반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

4. 주요내용

- 가. 매년 이자의 20%이상 기금 재 적립 조항 삭제(안 제4조)
-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 “해촉”을 “위촉해제”로 수정(안 제5조)
 - “기타”를 “그 밖의”로 수정(안 제5, 8조)
- 다. 같은 의미가 반복된 조항 수정(안 제10조)
- 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로 규정(안 제11조)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사회복지기금의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기금 증식을 위해 매년 이자의 20%이상을 재 적립하도록 명시한 조항을 삭제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 및 문구를 정비한 것임.
-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은 별도 계정에 의해 재해구호사업, 노인 복지 지원사업, 장애인복지 지원사업,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원사업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기금의 사용은 재해구호사업을 제외하고 해당연도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지출되고 있음.
- 이자 재 적립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첫째, 기금의 설치·운용이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른 단체위임 사무로 법리적인 문제가 없으며,
둘째, 도민의 기금 지출 확대 요구에 부응하고, 정부의 저금리 정책에 의한 이자수익금 감소 문제의 해결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사료됨.
- 또한 기금의 존속기한의 명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른 것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10년 이내로 정하되 존속기한 경과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 된 바 타당하다고 사료됨.